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13
----------	-------

발의연월일 : 2018. 12. 19.

발 의 자 : 기동민 · 이철희 · 전혜숙
맹성규 · 이재정 · 정춘숙
김상희 · 윤일규 · 박홍근
정세균 · 이춘석 · 민병두
인재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음. 이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닌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공정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꾀하려는 목적임. 그러나 본회의 투표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한 제지 조항이 없어, 교섭단체 간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결과가 도래될 수 있음.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 변경을 하는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하도록 하여 국회의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교섭단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상임위원장)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41조(상임위원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교섭단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u>